

임예진 관세법(2023년 대비) 개정사항 (2)

- 관세법 시행규칙 2022. 9. 16. 개정 [시행 2022. 9. 18.]

1차 p.28 / 2차 p.28 : 5. 관련 시행규칙 박스 수정

과세환율 [규칙 제1조의2]

-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하기 ②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단서 삭제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세부 결정방법 등